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53호 2023. 8. 4.(금)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95호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3-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5
남해군 고시 제2023-9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6
남해군 고시 제2023-98호 2023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시 .....	10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039호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12
남해군 공고 제2023-1040호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2
남해군 공고 제2023-1042호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	32
남해군 공고 제2023-1055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
남해군 공고 제2023-1056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38
남해군 공고 제2023-1070호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차 .....	40
남해군 공고 제2023-1071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44
남해군 공고 제2023-1076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47
남해군 공고 제2023-1078호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9
남해군 공고 제2023-1099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3
남해군 공고 제2023-1114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	66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95호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 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남 해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지방하천 봉천에 대하여 하천의 3대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갖는 생태복원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수 하천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 사업개요 : 생태하천 복원 : L=1.23km, 자연형여울 8개소, 목교설치 2개소, 징검다리 3개소 생태탐방로(흙콘크리트, 테크로드) L=1,03km, 상태학습장 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및 서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22년 11월 ~ 2025년 2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비 고
사업비	9,000	4,500	1,080	3,420	

9. 예정공정표 : 설계도서 참고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준공 후 남해군에서 직접 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3. 8월 ~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 재난안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현금지급
  - 보상가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아산리	1435	천	35,869	11,527	국(국토교통부)					
2	남해군 아산리	1002-4	천	20	20	경상남도					
3	남해군 아산리	1002-3	천	49	49	경상남도					
4	남해군 아산리	1001-6	천	49	49	경상남도					
5	남해군 아산리	1000-2	답	116	116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번길 **				
6	남해군 아산리	1000-1	천	374	374	경상남도					
7	남해군 아산리	999-1	천	38	38	경상남도					
8	남해군 아산리	1441	도	499	32	국(국토교통부)					
9	남해군 아산리	990-2	답	39	39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				
10	남해군 아산리	990-1	천	162	162	경상남도					
11	남해군 아산리	1440	구	3,064	16	국(농림축산식품부)					
12	남해군 아산리	989-1	천	39	39	경상남도					
13	남해군 아산리	989-2	답	39	39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				
14	남해군 아산리	988	천	175	175	경상남도					
15	남해군 아산리	986-2	답	18	18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				
16	남해군 아산리	986-1	천	148	148	경상남도					
17	남해군 아산리	986-3	답	5	5	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				
18	남해군 아산리	985	답	526	526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19	남해군 아산리	313-4	답	97	97	남해군					
20	남해군 아산리	313-3	도	17	11	남해군					
21	남해군 아산리	1434	도	198	8	국(국토교통부)					
22	남해군 아산리	316-1	대	92	92	(주)신흥**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가 ***·**				
23	남해군 아산리	332-12	답	8	8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				
						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장**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24	남해군 아산리	329	도	86	86	정** 외 1인	남변동 ***, 북변동 ***				
25	남해군 아산리	1433	도	1,601	9	국(국토교통부)					
26	남해군 아산리	900-1	천	301	139	경상남도					
27	남해군 아산리	900-3	천	73	73	경상남도					

# 남 해 군 공 보

(4) 제 753 호

2023년 8월 4일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8	남해군 아산리	1436	도	2,154	60	국(국토교통부)					
29	남해군 아산리	946-3	천	146	146	경상남도					
30	남해군 아산리	946-2	천	393	393	경상남도					
31	남해군 아산리	962-1	천	169	169	경상남도					
32	남해군 아산리	962-2	천	116	116	경상남도					
33	남해군 아산리	963-1	천	71	71	경상남도					
34	남해군 아산리	319-4	천	179	179	경상남도					
35	남해군 아산리	319-5	천	29	29	경상남도					
36	남해군 아산리	318-1	답	14	14	췌신흥**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가 ***.**				
37	남해군 아산리	1436-2	도	291	27	국(국토교통부)					
38	남해군 아산리	424	천	436	436	남해군					
39	남해군 서변리	327-1	전	36	36	장**	북변동 ***.*				
40	남해군 서변리	327-3	전	176	176	남해군					
41	남해군 서변리	329-3	전	41	41	남해군					
42	남해군 서변리	328	전	109	109	이**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43	남해군 서변리	328-1	천	127	127	남해군					
44	남해군 서변리	333	천	499	499	김**	북변동 ***				
45	남해군 서변리	490	도	4,484	35	국(기획재정부)					
46	남해군 서변리	342-1	천	40	40	경상남도					
47	남해군 서변리	341-1	천	128	128	경상남도					
48	남해군 서변리	491	천	23,653	3,824	국(국토교통부)					
계				76,993	20,550						

남해군 고시 제2023-96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지방하천)
2. 성 명 : (주)휴맥스이브이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4. 점용목적 : 전기차충전시설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면리 419번지(72인근) 공설운동장
6. 점용면적 : 1.61536㎡
7. 점용기간 : 2023. 7. 17. ~ 2027. 12. 31.

남해군 공고 제2023-97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남 해 군 수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 사유
		유 형	등 급	면 적 (㎡)	
천 동	경남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988-8번지 일원	붕괴위험	D	7,844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재난안전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3. 7. 17.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비고
천 동	2024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7,844㎡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6)**

### 천동지구 사진대장



### 천동지구 사진대장



남해군 고시 제2023-98호

## 2023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에 따라 2023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6일

### 남 해 군 수

####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해 수 욱 장 명	개 장 기 간	일수	개 장 시 간
상주은모래비치	2023. 7. 7. ~ 8. 20.	45	10:00 ~ 18:00
송정솔바람해변	2023. 7. 7. ~ 8. 20.	45	10:00 ~ 18:00
설리해수욕장	2023. 7. 7. ~ 8. 20.	45	10:00 ~ 18:00
두곡·월포해수욕장	2023. 7. 7. ~ 8. 20.	45	10:00 ~ 18:00
사촌해수욕장	2023. 7. 7. ~ 8. 20.	45	10:00 ~ 18:00

※ 상주은모래비치 : 7. 27. ~ 8. 15.(10일간) 19:00~21:00 야간개장 병행

#### 2.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또는 시설물 설치
- 2)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4)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5)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6)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폭죽, 불꽃놀이 등)
- 7) 허가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정하는 행위
- 8) 백사장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 9)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1039호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2.12.27.)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의무화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 사항 (안 제3조제1항)
- 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절차, 보고사항 등(안 제4조~제12조)
-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사항(안 제13조~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8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 055-860-30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지원시기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0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수 지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과 통지된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
-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수행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받은 보수가 제3조제5항에 따른 보험금과 중복될 경우 중복 지원된 금액만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3-1040호

##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남해군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원목적(안 제1조)
- 나. 지원대상 및 대상자 결정(안 제2조, 제4조)
- 다. 지원금액 및 방법(안 제3조, 제5조)
- 라. 카드 사용 및 가맹점 등록(안 제6조, 제7조)
- 마. 사용중지 등(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8월 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35, 팩스 055-860-389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별표 1에 따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① 읍·면장은 매년 분기별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작성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③ 읍·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 라 한다)에 의한다.

-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이·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이·미용 및 목욕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 군수는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사업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지원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지급시기	1월 5일까지	4월 5일까지	7월 5일까지	10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 신청서

구 분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재)발급사유			

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 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남해군 공고 제2023-1042호

##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09-10호(2009.2.2.)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8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조성사업
  - 명칭 : 남해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
3. 사업면적 : 13,338㎡(변경없음)
  - 금회 사업면적 : 800㎡(동물보호센터 신축부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의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32,461	13,338					
1	이동면	다정리	1751		구	12,420	179	농림축산 식품부	국			
2	이동면	다정리	1763		도	7,320	451	농림축산 식품부	국			
3	이동면	다정리	896	1	전	2	2	남해군	공			
4	이동면	다정리	897		묘	195	195	최*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5	이동면	다정리	898	1	전	23	23	남해군	공			
6	이동면	다정리	899	1	전	61	48	남해군	공			
7	이동면	다정리	906		대	6,389	6,389	남해군	공			
8	이동면	다정리	971		대	5,251	5,251	남해군	공			
9	이동면	다정리	973	1	답	800	800	남해군	공			

남해군 공고 제2023-1055호

###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를 효력 상실하고 건축신고 효력 상실 대상인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 남 해 군 수

- 1. 처분제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 2.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효력상실 대상

연번	건축주	위 치	신고번호	신고일	주용도	처분내용	관계법규
1	고*선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604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231	2020-08-27	창고시설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2	임*현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994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172	2020-06-22	창고시설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3	진*우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2002	2020-도시건축과- 신축신고-96	2020-04-27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4	최*림 외 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산 155-9	2015-도시건축과- 신축신고-195	2015-08-12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연번	건축주	위 치	신고번호	신고일	주용도	처분내용	관계법규
5	김*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721-1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21	2019-01-23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6	전*민(방*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 353-1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184	2019-07-08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7	주식회사*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179-6	2016-도시건축과-신축신고-128	2016-05-11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8	정*수(1블럭)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21-9 외1필지	2020-도시건축과-신축신고-286	2020-10-29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9	김*경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1-1	2017-도시건축과-신축신고-240	2017-07-17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0	박*영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양아리 679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179	2019-07-02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1	하*옥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452-20	2018-도시건축과-신축신고-79	2018-04-10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2	안*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산 57-8 외6필지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59	2019-03-19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3	김*옥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453	2015-도시건축과-신축신고-144	2015-06-23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4	김*숙 외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 51-4 외1필지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45	2019-02-28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5	문*자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044-2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55	2019-03-18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6	김*국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534-5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269	2019-10-08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7	조*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44-2	2018-도시건축과-신축신고-7	2018-10-15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8	손*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산 57-10 외8필지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72	2019-03-29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19	조*은 외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 51-4 외1필지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45	2019-02-28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20	최*선 외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산 51-4 외1필지	2019-도시건축과-신축신고-45	2019-02-28	단독주택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축법」 제14조

4. 처분원인 :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5. 공고기간 : 2023. 07. 20. ~ 2023. 08. 04. (15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건축신고 효력 상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건축민원팀 ☎055-860-3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1056호

###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되었음을 당사자(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 남 해 군 수

1.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건축허가 취소 처분내역

당사자 (건축주)	대 지 위 치	허 가 번 호	주용도	허 가 일 자
박*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53-1	2020-도시건축과- 신축허가-6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0. 02. 04.
주식회사 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585-3	2021-도시건축과- 신축허가-1	단독주택	2017. 08. 17.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처분된 내용 : 건축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공고기간 : 2023. 7. 20. ~ 2023. 8. 4.(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기타사항

본 처분(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1070호

##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2차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 나.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 다. 사업규모 : L=76.0m, B=8.0~10.0m(교량부 L=16.0m, B=8.0m)
- 라. 시 행 자 : 남해군수

###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기간 : 2023. 2. 27. ~ 사업종료시 까지
- 다. 출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토 지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양아리 외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7.25. ~ 2023.8.9.

- 열람 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055-860-3314)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  
고로 같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  
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  
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  
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55-860-33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군도7호선 소량교 재기설공사)

순위	동 명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상주면 양아리	642		답	327	327		남해군	
2	상주면 양아리	641-3		답	474	474		남해군	
3	상주면 양아리	641-2		도	56	56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21	박*조	
4	상주면 양아리	1950		구	7,412	167	세종 디스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농림축산식품부)	
5	상주면 양아리	1954		도	6,787	54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국토교통부)	
6	상주면 양아리	743-3		답	20	20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72	김*완	
7	상주면 양아리	763	763-1	답	912	48	부산 영도구 정학동369 대유맨션501	김*문	
8	상주면 양아리	762-1	762-3	전	205	4		박*준	미등기(사정토지)
9	상주면 양아리	743-2		도	195	195	남해군 남해읍 마운로9번길 12	남해군	
10	상주면 양아리	762-2	762-4	도	50	36	남해군 남해읍 마운로9번길 12	남해군	
11	상주면 양아리	744-2		도	66	66	남해군 남해읍 마운로9번길 12	남해군	
12	상주면 양아리	761-1	761-2	도	152	51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75	김*수	
소 계					16,656	1,498			

남해군 공고 제2023-1071호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108-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급경사지 정비공사
  - 명 칭 :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 다. 사업 량 : 급경사지 정비 L=400m
-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07. 25. ~ 8. 9.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1	남해	남면	상가	산 92-10	임	39	39		김0영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000-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122번길***-*
2	남해	남면	상가	산 91-1	임	11	11		김0기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새주소없음
3	남해	서면	대정	산 161-5	임	104	104		김0덕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000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82번길10, 420동 ***호 (계산동 은행마을대산아파트)
4	남해	서면	대정	산 162-6	임	214	214		여0두	부산시 남구 문현동 000-0 세영맨션 0-000	부산 동구 자성로116번길2, 103동 ***호 (범일동, 두산위브포세이돈 II)
5	남해	서면	대정	산 160-9	임	352	352		여0두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000-0	부산 동구 자성로116번길2, 103동 ***호 (범일동, 두산위브포세이돈 II)
계						720	720				

남해군 공고 제2023-1076호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2025.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7-1 일원	하천정비 : L=2,050m 등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3. 7. 26. ~ 2023. 8. 9.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7. 26. ~ 2023. 8. 9.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당초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56,554.5								
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43			구	73,243.0	18,855.0	54,38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7	197-1		답	545.0	58.0	487.0	공	남해군					
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9	199-1		답	1,792.0	110.0	1,682.0	공	남해군					
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8	198-1		답	783.0	174.0	609.0	공	남해군					
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5-2	195-3		답	3,425.0	173.0	3,252.0	공	남해군					
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3	703-1		답	1,230.0	129.0	1,101.0	공	남해군					
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4	704-1		답	248.0	40.0	208.0	공	남해군					
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5-1			답	192.0	192.0		공	남해군					
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5-2	705-4		답	570.0	283.0	287.0	공	남해군					
1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6-4			도	488.0	173.0	315.0	공	남해군					
1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6	706-1		답	26.0	19.0	7.0	국	기획재정부					
1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3	703-2		답	1,230.0	122.0	1,108.0	공	남해군					
1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7	697-2		답	1,278.0	94.0	1,184.0	공	남해군					
1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7-1			구	117.0	117.0		공	남해군					
1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6-1			구	108.0	108.0		공	남해군					
1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6	696-2		답	500.0	229.0	271.0	공	남해군					
1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8	708-1		도	1,778.0	370.0	1,408.0	공	남해군					
1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7	697-3		답	1,278.0	11.0	1,267.0	공	남해군					
1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5-2	695-4		답	380.0	20.0	360.0	공	남해군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분할		대 장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명 칭(성명)	주 소	관 리 내 용		
2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60			도	56.0	35.0	21.0	국	국토교통부					
2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0			도	4,536.0	44.0	4,492.0	국	국토교통부					
2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83	683-1		답	803.0	2.0	801.0	공	남해군					
2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9	709-1		도	106.0	83.0	23.0	공	남해군					
2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9	679-1		답	1,451.0	48.0	1,403.0	공	남해군					
2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9	679-2		답	1,451.0	306.0	1,145.0	공	남해군					
2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8	678-2		답	401.0	115.0	286.0	공	남해군					
2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7	677-2		답	1,118.0	112.0	1,006.0	공	남해군					
2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6	676-2		답	1,711.0	306.0	1,405.0	공	남해군					
2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80	680-1		답	922.0	361.0	561.0	공	남해군					
3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5	675-2		답	493.0	166.0	327.0	공	남해군					
3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4	674-1		답	526.0	108.0	418.0	공	남해군					
3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48-1	648-2		답	1,231.0	171.0	1,060.0	공	남해군					
3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3	673-2		답	1,739.0	203.0	1,536.0	공	남해군					
3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3	673-3		답	1,739.0	58.0	1,681.0	공	남해군					
3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2	672-3		답	859.0	113.0	746.0	공	남해군					
3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2	652-1		답	2,377.0	78.0	2,299.0	공	남해군					
3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4	654-1		도	3,971.0	529.0	3,442.0	공	남해군					
3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3	653-1		답	803.0	337.0	466.0	공	남해군					
3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5			답	191.0	191.0		공	남해군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4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4	654-2	도	3,971.0	107.0	3,864.0	공	남해군						
4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2	652-2	답	2,377.0	310.0	2,067.0	공	남해군						
4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2-2	622-4	답	44.0	12.0	32.0	공	남해군						
4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3-3	623-7	답	698.0	1.0	697.0	공	남해군						
4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2	622-3	창	538.0	154.0	384.0	공	남해군						
4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9		도	2,333.0	77.0	2,256.0	국	국토교통부						
4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0	620-2	도	798.0	629.0	169.0	공	남해군						
4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7	617-2	답	476.0	34.0	442.0	림동0	설천면 덕신리						
4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9-3	619-6	답	570.0	46.0	524.0	공	남해군						
4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3	1753-5	도	4,537.0	155.0	4,382.0	국	국토교통부						
5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9-1	619-4	도	576.0	457.0	119.0	공	남해군						
5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4		대	476.0	476.0		공	남해군						
5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1		전	93.0	93.0		공	남해군						
5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4		대	455.0	455.0		공	남해군						
5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4	1117-52	임	397.0	226.0	171.0	국	기획재정부						
5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2		대	313.0	313.0		공	남해군						
5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6		대	27.0	27.0		공	남해군						
5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5		대	25.0	25.0		공	남해군						
5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3		대	356.0	356.0		공	남해군						
5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08-1	1108-2	과	747.0	24.0	723.0	림근0	설천면 덕신리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당초		분할	대 장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6	1116-2	1116	1116-2	답	1,927.0	412.0	1,515.0	공	남해군					
6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09	1109-2	1109	1109-2	답	1,345.0	218.0	1,127.0	김성0	설천면 창남로87번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		근저당	
6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09-1	1109-3	1109-1	1109-3	도	202.0	27.0	175.0	한덕0	부산 영도구 신선동 2가					
6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2-1	1112-2	1112-1	1112-2	도	100.0	50.0	50.0	박을0	설천면 덕신리					
6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9-1	619-5	619-1	619-5	도	576.0	75.0	501.0	공	남해군					
6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3	1903-1	1903	1903-1	도	114.2	44.5	69.7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3	1823-1	1823	1823-1	답	1,376.3	140.3	1,236.0	공	남해군					
6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4	1824-1	1824	1824-1	답	1,517.1	201.5	1,315.6	공	남해군					
6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6-1		1116-1		도	309.0	309.0		공	남해군					
6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5	1825-1	1825	1825-1	답	1,547.9	232.5	1,315.4	공	남해군					
7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2	1892-1	1892	1892-1	답	1,526.1	489.4	1,036.7	공	남해군					
7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6	1826-1	1826	1826-1	답	1,396.2	203.5	1,192.7	공	남해군					
7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7	1827-1	1827	1827-1	답	1,503.3	246.5	1,256.8	공	남해군					
7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6	1866-1	1866	1866-1	구	356.4	332.1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8	1828-1	1828	1828-1	답	2,549.5	351.9	2,197.6	공	남해군					
7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2	1902-1	1902	1902-1	구	577.1	146.6	430.5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9	1829-1	1829	1829-1	답	2,523.6	381.8	2,141.8	공	남해군					
7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25-3		1125-3		도	91.0	91.0		공	남해군					
7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1	1891-1	1891	1891-1	답	2,388.3	770.2	1,568.1	공	남해군					
7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0	1830-1	1830	1830-1	답	3,041.0	417.5	2,623.5	공	남해군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8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4	1864-1	도	2,802.1	90.6	2,711.5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7	1877-1	답	2,457.2	5.8	2,451.4	공	남해군					
8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0	1900-1	도	1,543.5	109.2	1,434.3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1	1901-1	구	234.4	40.7	193.7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7-37		도	20.0	20.0		김덕0	설천면 덕신리					
8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1	1831.5	답	3,354.0	470.9	2,883.1	공	남해군					
8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7-33		도	23.0	23.0		김덕0	설천면 덕신리					
8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2	1832-1	답	1,672.7	214.9	1,457.8	공	남해군					
8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7-47		도	421.0	421.0		공	남해군					
8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3	1833-1	답	1,915.7	244.1	1,671.6	공	남해군					
9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6	1876-1	답	2,002.9	615.1	1,387.8	공	남해군					
9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7-34		도	50.0	50.0		김덕0	설천면 덕신리					
9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6	1896-1	구	591.4	83.9	507.5	국	농림축산식품부					
9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5	1895-1	도	1,360.2	509.7	850.5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5	1875-1	답	631.2	102.5	528.7	공	남해군					
9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4	1874-1	답	841.4	136.0	705.4	공	남해군					
9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3	1873-1	답	966.4	135.7	830.7	공	남해군					
9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2	1872-1	답	999.1	140.3	858.8	공	남해군					
9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1	1871-1	답	1,725.2	299.6	1,425.6	김연0	설천면 덕신리					
9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4	1834-1	답	3,272.8	407.0	2,865.8	공	남해군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10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7-35		도	17.0	17.0		공	남해군					
10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5	1835-1	답	1,328.5	153.4	1,175.1	공	남해군					
10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6	1836-1	답	1,941.0	233.4	1,707.6	공	남해군					
10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7-36		도	93.0	93.0		공	남해군					
10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7	1837-1	답	3,008.7	368.6	2,640.1	공	남해군					
10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8	1838-1	답	986.2	104.5	881.7	공	남해군					
10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9	1839-1	답	1,901.7	178.4	1,723.3	공	남해군					
10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30-2		도	93.0	93.0		공	남해군					
10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1	1784-1	답	1,363.7	145.7	1,218.0	공	남해군					
10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9	1869-2	답	1,806.8	737.9	1,068.9	공	남해군					
11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3	1843-1	답	1,085.1	178.3	906.8	공	남해군					
11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40-69		도	26.0	26.0		김덕0	설천면 노량리					
11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4	1844-1	답	865.3	184.1	681.2	공	남해군					
11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5	1845-1	답	567.5	134.1	433.4	공	남해군					
11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3-2		도	23.0	23.0		공	남해군					
11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6	1846-1	답	1,512.1	433.0	1,079.1	공	남해군					
11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7	1867-1	구	1,420.5	894.0	5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1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0	1870-2	답	595.0	2.1	592.9	공	남해군					
11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4	1894-1	구	918.9	73.1	845.8	국	농림축산식품부					
11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4		답	288.0	288.0		공	남해군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12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4	산254-1		임	14,380.0	607.0	13,773.0	공	남해군					
12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3-3			도	669.0	669.0		국	국토교통부					
12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3-3			도	194.0	194.0		공	남해군					
12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4	산254-2		임	14,380.0	5.0	14,375.0	공	남해군					
12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7	1847-1		답	2,516.5	1,188.2	1,328.3	공	남해군					
12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5-4			도	30.0	30.0		공	남해군					
12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5-3			도	63.0	63.0		공	남해군					
12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2	1862-1		도	1,482.3	93.7	1,388.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6-2			도	36.0	36.0		정삼0	설천면 노량리					
12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8	1848-1		답	2,400.7	263.9	2,136.8	공	남해군					
13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8	1868-1		구	2,410.8	765.7	1,64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3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2			도	117.0	117.0		공	남해군					
13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9	1849-1		답	2,562.0	432.8	2,129.2	공	남해군					
13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0			답	354.0	354.0		공	남해군					
13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5-	산255-7		임	4,013.0	50.0	3,963.0	공	남해군					
13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0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13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5-	산255-8		임	609.0	43.0	566.0	공	남해군					
13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0	1850-1		답	1,177.6	202.7	974.9	김점0	설천면 노량리					
13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71-2			도	69.0	69.0		공	남해군					
13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1	1851-1		답	1,357.3	216.3	1,141.0	공	남해군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14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74-2			도	33.0	33.0		공	남해군					
14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2	1852-1		답	1,292.7	198.3	1,094.4	공	남해군					
14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3	1853-1		답	1,563.1	257.8	1,305.3	공	남해군					
14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75-2			도	10.0	10.0		공	남해군					
14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4	1854-1		답	2,062.6	373.9	1,688.7	공	남해군					
14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3			도	387.0	387.0		공	남해군					
14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5	1855-1		답	1,533.6	532.3	1,001.3	공	남해군					
14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5-4			도	43.0	43.0		공	남해군					
14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6	1386-1		답	2,082.0	1,049.0	1,033.0	공	남해군					
14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405	1405-3		답	2,785.0	110.0	2,675.0	공	남해군					
15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1	1394-33		답	1,236.0	299.0	937.0	공	남해군					
15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94-20			답	139.0	139.0		공	남해군					
15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2-6			도	494.0	494.0		국	국토해양부					
15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7	1394-34		답	551.0	30.0	521.0	공	남해군					
15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94-24			답	4.0	4.0		국	국토해양부					
15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72-13			도	1,651.0	18.0	1,633.0	국	국토해양부					
15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94-29			도	36.0	2.0	34.0	국	국토해양부					
15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94-16			도	14.0	14.0		이실	설천면 덕신리					
15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2	1394-32		전	331.0	203.0	128.0	공	남해군					
15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5-5			도	48.0	48.0		국	국토교통부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16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4-7	1384-12		도	583.0	24.0	559.0	공	남해군					
16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4-8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16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0-2			도	1,960.0	790.0	1,170.0	국	국토교통부					
16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4-11	1384-11		전	792.0	140.0	652.0	공	남해군					
16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1	1351-59		답	620.0	123.0	497.0	공	남해군					
16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9	1351-58		답	1,609.0	192.0	1,417.0	공	남해군					
16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8	1394-35		전	615.0	181.0	434.0	공	남해군					
16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1			전	717.0	717.0		서정0						
16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9	1394-36		전	1,213.0	189.0	1,024.0	공	남해군					
16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94-1	1394-37		답	2,725.0	147.0	2,578.0	공	남해군					
17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1			제	592.0	499.0	9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3			제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96-6	1396-81		답	799.0	27.0	772.0	국	국토해양부					
17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2			제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			제	4,149.0	338.0	3,8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8	1351-57		답	790.0	137.0	653.0	공	남해군					
17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32			답	72.0	18.0	54.0	국	국토해양부					
17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7	1351-56		답	701.0	65.0	636.0	국	국토해양부					
17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40			제	209.0	209.0		국	국토교통부					
17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3	1351-60		답	748.0	61.0	687.0	국	국토해양부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분할	분할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8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61351-55			답	515.0	42.0	473.0	국	국토해양부					
18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49			제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18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41351-61			유	327.0	57.0	270.0	국	국토해양부					
18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51-25			제	1,011.0	289.0	722.0	국	국토해양부					
18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21351-54			창	1,451.0	156.0	1,295.0	공	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23-1078호

##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 2.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 수,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등 구성 개정(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운영 방식 개정(안 제6조)
- 다. 위원의 해촉 기준 개정(안 제7조)
- 라. 지명 조사 방법 등 삭제(안 제8조)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8월 1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23, 팩스 055-860-373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민원지적과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로 한다.

제3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호선한다” 를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명주소” 를 “지명 업무” 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출석과” 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

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099호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2. 개정 취지 :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으로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에 포함된 수산분야 관련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기존)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 변경) 남해군
    - 기존) 군수 → 변경) 남해군수
  - 나. 정의(안 제2조)
    - 기존) “군” 이 → 변경) 남해군수가
  - 다. 사용대상품목(안 제 3조)
    - 군 내 → 변경) 남해군 내(안 제3조 2항)
  - 라.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안 제8조)

- 기존) 위원회 구성 22명 → 변경) 11명(안 제8조 2항)
- ※ 통합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에 있는 3개분과 중 수산분과를 폐지하고 나머지 2개분과(농산분과, 특산분과)는 통합
- 기존) 위원장 부군수 → 변경)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안 제8조 3항)
- 기존)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수산·관광·스포츠·지역경제 → 변경) 농정유통·관광·스포츠·지역경제(안 제8조 3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8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11, 팩스 055-860-39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055-860-8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을 “남해군” 으로, “군수” 를 “남해군수” 로 한다.

제2조 중 “군이”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중 “군내” 를 각각 “남해군 내”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2명” 을 “1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가” 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수산·관광·스포츠·지역경제” 를 “농정유통·관광·스포츠·지역경제”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1114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남해군 공고 제2023-685호(2023.05.12.)로 공람·공고한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중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반영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 참조
- 2.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3.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4.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도립남해전문대학	대학	남해읍 북변리	73,552	감)6,657	66,895	경고 제104호 (1995.5.12.)	

※ 기정 :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17-305호, 2017.07.20.)

나.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도립 남해 전문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변경 :73,552㎡ → 66,895㎡ (감 6,657㎡)</li> <li>※ 변경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면적오차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73,552㎡ → 68,419㎡(감 5,133㎡)</li> </ul> </li> <li>▶ 학교 경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68,419㎡ → 66,895㎡(감 1,524㎡)</li> <li>- 증 657㎡ + 감 2,181㎡ = ± 2,838㎡</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토지의 지적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면적오차 정정</li> <li>• 남해대학(경상남도) 소유 학교용지의 지적선 및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군계획시설(학교) 변경</li> </ul>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66,895	100.0	
교육연구시설용지	31,376	46.9	
운동시설용지	13,324	19.9	
도로용지	4,572	6.8	
녹지용지	17,623	26.4	

나. 건축계획

1) 총괄표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법정	계획	법정	계획	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41,601	16.1%	60%이하	46.5%	250%이하	4층이하	제한없음
자연녹지지역	25,294	14.4%	20%이하	38.4%	100%이하	4층이하	제한없음

2) 건축배치계획

구분	연번	시설명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 연면적 (㎡)	높이 (지하/ 지상)	비고
교육 연구 시설 용지	1	대학본부	교육기본시설	1,169.46	4,812.08	4,196.88	1/4	현황
	2	사회과학관	교육기본시설	1,095.63	3,770.51	3,707.61	1/4	현황
	3	공학관	교육기본시설	1,012.32	4,121.20	3,995.40	1/4	현황
	4	조리과학관	교육기본시설	1,096.40	3,232.10	3,232.10	0/3	현황
	5	학생회관	교육기본시설	647.81	1,546.41	1,447.91	1/3	현황
	6	한울관	지원시설 (남자기숙사)	845.53	3,054.39	2,455.26	1/3	현황
	7	송죽관	부속시설 (교직원 숙소)	458.07	924.96	867.43	1/2	현황
	8	다솜관	지원시설 (여자기숙사)	722.92	2,490.80	2,108.26	1/3	현황
	9	경남항공 교육원	교육기본시설 (항공정비실습동)	1,176.33	2,283.53	2,283.53	0/3	현황
	10	지역산업기 술 교육센터	교육기본시설 (항공특수 융접실습동)	258.00	258.00	258.00	0/1	현황
	11	야외조경 실습동	지원시설	41.44	41.44	41.44	0/1	현황
	12	유리온실	지원시설	150.52	150.52	150.52	0/1	현황
	13	정보문화센 터	교육기본시설 (도서관)	697.42	1,559.40	1,494.60	1/3	신축
	14	기숙사	지원시설 (학생기숙사)	972.81	2,842.75	2,842.75	0/4	신축
합계				10,344.66	31,088.09	29,081.69	-	-